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19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문진석 · 서미화 · 허영
강준현 · 정준호 · 박정현
이연희 · 복기왕 · 김교홍
최혁진 · 김종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통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는 초광역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산업 전략으로,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에 실행력 있는 개발 계획은 부재함.

이에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권을 육성하여 5극3특 경제·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역별 기능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 전략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권역을 “광역권”으로, 광역권 내에서 산업·교통 등의 기능 수행이 활발하여 범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지구를 “거점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광역권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안 제4조).
- 라. 광역권 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권을 대상으로 혁신기반, 교통망, 정주여건 등 사업을 묶어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점지구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자율차·UAM 시범지구, 문화도시 등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학연협력, 창업센터, 도로·철도 등 건설, 공공주택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 등

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광역권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금융, 산업융합, ICT,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권 내 주택 공급기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의료기관 부대사업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수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신속·일괄 실시,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제23조 및 제24조).

아.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및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 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자. 광역권별 범부처 지원 및 특례를 구체화한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범부처)-지방(광역권) 간 광역권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체결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예산을 우선 지원하며, 협약 준수를 관리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의 원활한 체결과 이후의 이행관리 등에

진밀히 협력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광역권발전협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권”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라 함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권 내에서 산업·교통·물류·문화·관광 등의 기능 수행이 활발하거나 향후 특정 기능을 활성화할 구역으로서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어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지구를 말한다.

3. “광역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혁신기반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단지, 창업 공간 등 혁신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나. 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교통·물류망 구축에 관한 사업

다. 공공주택,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주거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라. 체육, 보건의료 등 생활 여건 개선과 문화, 관광 기반 조성
에 관한 사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광역권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지역의 광역권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광역권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3.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제5조에 따른 광역권이 단일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경우이면서, 제2호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③ 제7조에 따른 광역권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제5조에 따른 광역권이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광역권 개발계획의 수립

제5조(광역권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권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광역권이 같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신청
 2. 광역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
- ② 광역권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등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대도시 중심형: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권역
 2. 도시 연계형: 제1호 이외의 지역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시·군과 같은 생활권에 있거나 연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이 인구 50만 이상의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권역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광역권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이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역권을 지정한다.
-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권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권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 등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개발계획의 입안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권의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해당 광역권을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개발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1. 광역권이 같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2. 광역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

② 개발계획 수립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광역권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획기간
2. 광역권의 범위, 현황, 발전목표 및 여건변화 전망

3. 광역권 내 도시별 기능 분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광역권 내 거점지구 설정에 관한 사항
5. 광역권의 특화 산업 육성 및 혁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광역권의 교통·물류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광역권의 주택공급 등 주거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광역권의 체육, 보건의료 등 생활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광역권의 문화, 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0.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광역권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개발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광역권 개발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개발계획 수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권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개발계획안의 입안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광역권 개발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결정) ① 개발계획 수립주체는 제6조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입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개발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결정한다. 결정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변경된 개발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시대위원회 및 개발계획 수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수립주체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개발계획의 집행 등)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지원 사항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광역권 성장을 위한 지원 등

제9조(특구 우선 지정 등) ① 개발계획 수립주체는 거점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등으로 지정·구성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지정·구성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1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1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1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1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

심융합특구의 지정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17.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18.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9.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21. 그 밖에 광역권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지정

② 개발계획 수립주체 거점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창업 공간 등 혁신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

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업기술단지 지원사업

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2. 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교통·물류망 구축에 관한 사업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및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다. 「도로법」 제8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 건설 등 사업의 지원

라. 「도시철도법」 제22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등에 관한 지원

3. 공공주택,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주거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사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 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4. 체육, 보건의료 등 생활 여건 개선과 문화, 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립유치원 또는 공립유치원의 설립

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

사. 「도서관법」 제33조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 설립·운영 등 지원

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자.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지원

5. 그 밖에 광역권 성장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 지원) ① 국가는 광역권 내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6.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

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이전 기업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광역권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대학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광역권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광역권으로 이전하는 기업,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거점지구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지구 내 학교 또는 법인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광역권의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기관의 종사자 자녀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광역권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핵심사업을 위한 특례 등

제16조(핵심사업의 선정 등) ① 개발계획 수립주체는 개발사업의 일부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핵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받은 사업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 수립주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안 제출 시에 제1항에 따른 핵심사업의 선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결정 시에 핵심사업도 함께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선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개발계획 수립주체가 개발계획 및 제25조에 따라 체결한 광역권발전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금융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개발계획 수립주체는 거점지구 내 입주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교육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관리법」·「하천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광역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개발계획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지정에 관하여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결정된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입안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 및 제35조의

7을 따른다.

제2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광역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행기간을 단축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핵심사업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하여 지역균형성장을 위하여 특별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우선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핵심사업 등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로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사업의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행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안서 검토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제16조제2항에 따른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하여 지역균형성장을 위하여 특별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성 조사의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심의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광역권발전협약의 체결 등

제25조(광역권발전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개발계획 수립주체(이하

“광역권발전협약 체결주체”이라 한다)는 개발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광역권을 범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광역권발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 또는 변경체결할 수 있다.

1. 대상 개발사업(다수의 사업을 단일의 광역권발전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에 관한 사업계획
 2. 광역권발전협약 체결주체의 책무 및 투자계획
 3.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세부 지원사항
 4. 광역권발전협약의 효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권발전협약을 체결 또는 변경체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권발전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광역권발전협약 체결주체 간의 통보로 광역권발전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광역권발전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광역권발전협약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25조에 따라 체결한 광역권발전협약의 내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에 따른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특별회계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27조(광역권발전협약의 이행관리) ① 광역권발전협약 체결주체는 제25조에 따른 광역권발전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매 1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권발전협약의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권발전협약 체결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관리의 결과가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광역권발전협약 체결주체에게는 광역권발전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광역권발전협약의 이행관리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광역권발전협약 추진협의체) ① 광역권발전협약 체결주체는 제25조에 따른 광역권발전협약의 체결 및 제27조에 따른 광역권발전협약의 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광역권발전협약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전문기관의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광역권의 지정에 관한 업무
2.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결정에 관한 업무
3. 제8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핵심사업의 선정에 관한 업무

5. 제25조, 제27조에 따른 광역권발전협약의 체결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